

● 제319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78 )

2023. 6.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878

###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시장

나. 제안일 : 2023. 5. 30.

다. 회부일 : 2023. 6. 01.

####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 가. 세입예산

-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464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억 8400만원(10.9%)이 증액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46억 9100만원이 증가(3.0%) 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5억 2천3백만원을 포함한 보전수입등 195억 6천1백만원을 증액되었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498,737	246,427	222,143	24,284(10.9)
세외 수입	경상적	43,304	37,647	-
	임시적	22,810	27,445	32(0.1)
	행정제재부과금	13	6	-
지방교부세	850	-	-	-
국고보조금 등	427,457	159,076	154,385	4,691(3.0)
지방채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03	22,253	2,692	19,561(726.6)

나. 세출예산 총괄

-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6467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억 8800만원(1.9%)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130,216	646,761	634,773	11,988(1.9)
행정운영경비	8,568	9,364	8,964	400(4.5)
재무활동	4,094	3,038	-	3,038(-)
사업비	1,117,554	634,359	625,809	8,550(1.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서울특별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민생경제 부담 완화와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 상황 속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힘<sup>1)</sup>.
- 2023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조 408억원 규모로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가 증가함.
- 2023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347억 7300만원 대비 119억 8800만원 증액한 6467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은 이번 추경안의 편성배경에 대하여 ① 소아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② 마약류 오남용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③ 저출산 대응 난임극복 지원을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번 추경안에 증액사업은 69건 331억 6700만원, 감액사업은 19건 △221억 8000만원이며 증감액 없이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조정이 1건임.

1)자료: 국윤진, 2023.06.12.,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최…서울시 3조 추경안 등 215개 안건 처리”, TBS 뉴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498921&seq\\_800=20491601](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498921&seq_800=20491601)

## 2 세입 및 세출 총괄

### 1) 세입예산 총괄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2464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46억 9100만원 증),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165억 2300만원), 보전수입등(195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498,737	246,427	222,143	24,284(10.9)
세외 수입	경상적	43,304	37,647	-
	임시적	22,810	27,445	32(0.1)
	행정재재부과금	13	6	-
지방교부세	850	-	-	-
국고보조금 등	427,457	159,076	154,385	4,691(3.0)
지방채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03	22,253	2,692	19,561(726.6)

## 2) 세출

### 가) 세출예산 총괄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6467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47억 7300만원 대비 119억 8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130,216	646,761	634,773	11,988(1.9)
행정운영경비	8,568	9,364	8,964	400(4.5)
재무활동	4,094	3,038	-	3,038(-)
사업비	1,117,554	634,359	625,809	8,550(1.4)

### 나) 부서별 세출예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추경 편성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스마트건강과 12건(106억 4200만원), 보건의료정책과 21건(97억 2500만원), 정신건강과 9건(40억 3600만원), 식품정책과 4건(2억 8000만원) 순으로 추경금액이 높았으며, 공공의료추진단은 9건(△ 156억 3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음.
- 그 외 사업소별 추경 편성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북병원 7건(27억 65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8건(17억 4000만원), 어린이병원 3건(1억 4100만원) 순으로 추경금액이 높았으며, 은평병원은 3건(△ 18억 8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634,773	11,988	646,761	1.9	89
보건의료정책과	80,846	9,725	90,571	12.0	21
스마트건강과	116,666	10,642	127,308	9.1	12
정신건강과	108,075	4,036	112,111	3.7	9
감염병관리과	120,170	31	120,201	0.0	11
코로나19대응지원과	38,753	15	38,768	0.0	1
식품정책과	16,546	280	16,826	1.7	4
감염병연구센터	1,175	134	1,309	11.4	1
공공의료추진단	94,385	△15,638	78,747	△16.6	9
보건환경연구원	23,567	1,740	25,307	7.4	8
어린이병원	9,274	141	9,414	1.5	3
은평병원	11,594	△1,883	9,711	△16.2	3
서북병원	13,721	2,765	16,486	20.2	7

다) 편성목적별 세출예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을 기정예산 대비 119억 8800만원(1.9%) 증액편성하여 6467억 6100만원으로 제출하였는데,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저출산 대응 난임극복 지원(105억원), ② 소아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39억원), ③ 마약류 오남용 예방 종합대책 추진(17억원) 등 주요 현안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됨.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 주요 내용

(단위 : 억원)

구분	주요내용	규모
소아응급, 마약, 난임 등 시정현안 추진 (162억원)	소아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39.5
	마약류 오남용 예방 종합대책 추진	17.2
	저출산 대응 난임극복 지원	105.5
계획변경 등에 따른 감액편성 (△203억)	서남병원 증축 증 설계기한 연장에 따른 공사비 감액	△197.2
	기타 계획 변경 등에 따른 감액	△5.9
국비사업 확정(변경)내시 반영 (71억)	국고 보조사업 교부액 변경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반영	71.1
그 외 신규사업 및 사업확대 등 (90억원)	치매안심병원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확대	19.1
	재난·참사 대응 사전예방교육 등 대응역량강화	10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30.4
	기타	30.2

라)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추경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89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증액사업은 총 69건(331억 6700만원), 감액사업은 총 19건 △221억 8000만원이며 증감액 없이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조정이 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보건의료정책과		(×14,759) 80,846	(×2,372) 9,725	(×17,132) 90,571	
1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420	△90	330	• 시립병원 평가 포상금 이관
2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x270) 422	(x16) 25	(x286) 446	• (국비내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비 증액 등 국비 내시 반영
3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국비)	(x320) 640	(x80) 160	(x400) 800	• (국비내시) 25개 자치구 및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응급처치교육 지원 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4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자체)	-	818	818	•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대응인력·재난교육인력 보강 및 자치구 CPR 상설교육장 설치(14개소) 지원
5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국비)	(x117) 187	(x35) 55	(x152) 243	• (국비내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지원 비용 확대 등 국비내시 반영
6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국비)	(x99) 198	(x△3) △6	(x96) 192	• (국비내시)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용 감액 등 국비내시 반영
7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13	6	19	•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대면회의 활성화에 따른 회의 운영비 증액
8	응급의료기관 지원	(x4,348) 5,054	(x971) 1,083	(x5,319) 6,137	• (국비내시)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9	응급의료기관 지원(자체)	-	3,950	3,950	•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2개소 등 운영
10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국비)	(x57) 81	(x2) 3	(x59) 84	• (국비내시)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운영비용 증액 등 국비 내시 반영
11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국비)	(x220) 439	(x5) 11	(x225) 450	• (국비내시) 재난거점병원(7개소)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지원 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12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자체)	140	114	254	•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훈련 시행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지원 등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13	서울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460	70	530	• 재난의료 FMTP 교육 확대
1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x50) 100	(x80) 160	(x130) 260	• (국비내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15	유해약물 안전관리	221	619	840	•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교육, 마약류 익명검사 지원, 마약류 외래치료기관 지원을 통한 치료인프라 확대 등
16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2,687	△500	2,187	• 소아응급 대응 위한 사업 개편으로 대상업소 수 감소하여 예상되는 집행잔액 감액
17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x1,972) 1,972	(x△122) △122	(x1,850) 1,850	• (국비내시)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비용 감액 등 국비내시 반영
18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x-) -	(x120) 181	(x120) 181	• (국비내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을 위한 국비내시 반영
19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x-) -	(x1,187) 1,781	(x1,187) 1,781	• (국비내시)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을 위한 국비내시 반영
20	서울시민의 골다공증 예방·관리	-	20	20	•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및 위험군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전문인력 교육
21	국고보조금 반환	-	1,388	1,388	• 국고보조금 반환(8개 사업)
스마트건강과		(x23,091) 116,666	(x61) 10,642	(x23,152) 127,308	
22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국비)	(x1,375) 2,178	(x77) 106	(x1,452) 2,284	• (국비내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비용 증액 등 내시반영
23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 진	(x5,884) 7,782	(x△18) △37	(x5,866) 7,745	• (국비내시) 국비내시 한도 내에서 감추경
24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자체)	101	12	113	• 저소득층 및 비혼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지원
2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아 의료비 지원	(x237) 514	(x△6) △13	(x231) 501	• (국비내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26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x324) 702	(x10) 22	(x334) 724	• (국비내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27	난청 조기진단 지원	(x30) 65	(x2) 5	(x32) 70	• (국비내시)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28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x3,283) 7,113	(x△76) △165	(x3,207) 6,949	• (국비내시) 영아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용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등 국비내시 반영
29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11,610	10,548	22,158	• 난임기술 지원 시 소득기준 폐지 및 시술 칸막이 폐지
3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x36.4) 54.6	(x0.3) 0.5	(x36.7) 55.1	• (국비내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비용 증액 등 내시반영
3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x264) 572	(x3) 7	(x267) 579	• (국비내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용 증액 등 국비 내시반영
32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x132) 197	(x69) 104	(x201) 301	• (국비내시) 2개 자치구 신규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 내시반영
33	국고보조금 반환	-	53	53	• 국고보조금 반환(3개 사업)
정신건강과		(x27,481) 108,075	(x2,169) 4,036	(x29,650) 112,111	
34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x14,649) 21,973	(x1,900) 2,850	(x16,549) 24,823	• (국비내시)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35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x3,893) 8,164	(x408) 837	(x4,301) 9,002	• (국비내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36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x19) 4,326	(x△7) 18	(x13) 4,345	• 마약류 중독 재활프로그램 개발, 마음건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문회의 비용 등
37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x2,421) 4,112	(x117) 158	(x2,537) 4,270	• (국비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인력 충원을 위한 국비내시 반영
38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x2,661) 4,072	(x△309) △343	(x2,351) 3,729	• (국비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증진사업 비용 감액 등 국비내시 반영
39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x100) 200	(x50) 100	(x150) 300	• (국비내시)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인건비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40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x260) 389	(x3) 4	(x263) 394	• (국비내시) 자치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41	자살 유족 지원사업	(x1,137) 1,934	(x8) 3	(x1,145) 1,937	• (국비내시) 유족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조정 등 국비내시 반영
42	국고보조금 반환	-	407	407	• 국고보조금 반환(11개 사업)
감염병관리과		(x54,121) 120,170	(x△139) 31	(x53,982) 120,201	
43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x428) 428	(x△4) △4	(x424) 424	• (국비내시) 의료관련 감염관리 교육 비용 감액 등 국비내시 반영
44	급성감염병 격리치료	(x9)	(x△0.6)	(x8.4)	• (국비내시) 1·2급 감염병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비	18	△1.2	16.8	격리치료비 감액 등 국비내시 반영
45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x65.5) 131	(x△0.5) 1	(x66) 132	•(국비내시) 인플루엔자 등 주요감염병 표본감시비용 감액 등 국비내시 반영
46	외국인근로자 등 감염병 관리	26	57	83	•서울시 합법 체류 외국인 중 에이즈·결핵 감염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
47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x20) 40	(x1) 2	(x21) 42	•(국비내시) 생물테러 대비 훈련 운영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48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x15) 30	(x△1) △1	(x14) 29	•(국비내시) 생물테러 대비 초동대응요원 보호구 지원비용 감액 등 국비내시 반영
49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Level C)	(x-) -	(x6) 12	(x6) 12	•(국비내시) 생물테러 대비 초동대응요원 보호구 지원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50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 관리(국비)	(x3,856) 6,573	(x△26) △43	(x3,830) 6,529	•(국비내시) 집단시설 잠복결핵사업 검진비 감액 등 국비내시 반영
51	결핵 관리-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x3,272) 3,272	(x△110) △110	(x3,162) 3,162	•(국비내시) 민간의료기관 결핵사업 보조금 감액 등 국비내시 반영
52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접종 실시	(x37,555) 81,370	(x△5) △11	(x37,550) 81,359	•(국비내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백신비 및 접종비 지원비용 감액 등 국비내시 반영
53	국고보조금 반환	-	130	130	•국고보조금 반환(15개 사업)
코로나19대응지원과		(×17,857) 38,753	(x-) 15	(×17,857) 38,768	
54	국고보조금 반환	-	15	15	•국고보조금 반환(1개 사업)
식품정책과		(×6,502) 16,546	(×11) 280	(×6,514) 16,826	
55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x75) 163	(x15) 33	(x90) 195	•(국비내시) 신규센터 1개소 추가선정에 따른 센터운영비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56	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	(x91) 136	(x△4) △5	(x87) 131	•(국비내시) 안심식당 위생물품 지원 비용 감액 등 국비내시 반영
57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x111) 221	-	(x111) 221	•(국비내시) 국비 총액 변동없이 통계목 간 예산조정 등 국비내시 반영
58	국고보조금 반환	-	253	253	•국고보조금 반환(9개 사업)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감염병연구센터	(×304) 1,175	(×-) 134	(×304) 1,309	
59	국고보조금 반환	-	134	134	•국고보조금 반환(2개 사업)
	공공의료추진단	(×7,138) 94,385	(×201) △15,638	(×7,339) 78,747	
6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14,580	1,000	15,580	•노후화된 의료장비(MRI) 도입
61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x1,830) 3,660	(x170) 340	(x2,000) 4,000	•(국비내시)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등 국비내시 반영
62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x-) -	(x31) 62	(x31) 62	•(국비내시) 지방의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위한 국비 내시반영
63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17,587	△14,143	3,714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감추경
64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7,500	△3,245	4,255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감추경
65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운영보조)	(x1,274) 2,548	(x4) 7	(x1,278) 2,555	•(국비내시) 운영보조 사업과 자본보조 사업 간 국비 교부액 상호 변경 등 국비내시 반영
66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자본보조)	(x16) 32	(x△4) △7	(x13) 25	
67	시립병원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	-	110	110	•시립병원 평가업무 일원화에 따른 포상금 예산 반영 및 시립병원 관리·운영을 위한 위원회 등 운영비
68	국고보조금 반환(자체)	-	238	238	•국고보조금 반환(2개 사업)
	보건환경연구원	(×2,872) 23,567	(×15) 1,740	(×2,888) 25,307	
69	식품 안전성 검사(자 체)	316	65	381	•식품 안전검사를 위한 노후화된 방사능 검사장비 교체
70	의약품 안전성 검사(자 체)	118	500	618	•마약류 검사장비 구매
71	강북 유통농수산물·한 약재 안전성 검사	441	10	451	•한약재 유해물질 검사 시험법 개발 및 모니터링 수행
72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경상)	(x75) 151	(x15) 30	(x91) 181	•(국비내시)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73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x91) 3,517	177	(x91) 3,694	•노후화한 대기질 측정장비 교체
74	생활 환경오염물질 검사	451	85	536	•노후화한 대기 오염물질 분석장비 교체
75	청사시설 유지관리	2,589	457	3,045	•고위험 연구실 안전환경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개선을 위한 강서지소 이전 및 설비 설치 등
76	국고보조금 반환	-	416	416	• 국고보조금 반환(31개 사업)
	어린이병원	(x-) 9,274	(x-) 141	(x-) 9,414	
77	어린이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관리	1,654	22	1,676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78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499	109	609	• 전동식 흉벽 진동기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보강
79	어린이병원 사회복지부 요원 운영(전환사업)	40	9	49	• 사회복지부요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
	은평병원	(x-) 11,594	(x-) △1,883	(x-) 9,711	
80	은평병원 의료 및 행 정장비 확충	245	420	665	• 마약류 검사장비 구매
81	은평병원 사회복지부 요원 운영(전환사업)	142	31	172	• 사회복지부요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
82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리모델링) 추진	4,801	△2,333	2,468	•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감추경
	서북병원	(×259) 13,721	(x-) 2,765	(×259) 16,486	
83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 영관리	4,212	79	4,291	• 외래진료 활성화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확대
84	서북병원 공공의료서 비스 수준 관리	3,197	1,996	5,193	• 치매안심병동 구축, 호스피스 완화병동 리모델링 등
85	서북병원 고객중심 진 료서비스 제공	113	13	127	•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86	서북병원 의료 및 행 정장비 확충	288	264	552	• 치매안심병원 운영물품 구입,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 행정장비 구매 등
87	서북병원 사회복지부 요원 운영(전환사업)	187	11	197	• 사회복지부요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
88	기본경비	2,659	400	3,059	• 냉·난방비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확보
89	국고보조금 반환	-	3	3	• 국고보조금 반환(1개 사업)

### 3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사업별설명서 p.1338>

##### ①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이하 “시민건강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2014년에 최초로 제1기 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동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시행 2021. 3. 25.]

제9조(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시가 관할하는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사항
8.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은 「시민건강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동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촉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시행 2021. 3. 25.]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u>한다. ② (생략)</p> <p>③ 위원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u>제2호부터 제6호까지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u>이어야 한다.</p>
<p>1.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p>
<p>2. 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 위원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u>시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u></p>
<p>3. 건강 관련 <u>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u></p>
<p>4. 건강 관련 시민단체, 지역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p>
<p>5. <u>학교보건, 산업안전 보건관계자</u></p>
<p>6.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u>서울시민</u></p>
<p>7. 시 시민건강국장</p>

- 위원회 회의 운영은 동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4항<sup>2)</sup> 따라 분기별 1회 개최(연 4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음.

2)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12조(회의 운영) ②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또한, 동 조례 제12조의2<sup>3)</sup>가 21년 3월 25일에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
- 현재 ‘시민건강위원회’는 제4기(’21.2.25.~ ’23.2.24.)까지 운영을 마쳤으며, 제5기 시민건강위원회는 시민위원 공모가 2차례 연장되어 2023년 4월 25일에 총 25명<sup>4)</sup>(시민공모 10명)의 위원을 선정하였음. 그리고 제5기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계획은 6월 중 수립할 예정임.

〈제1기 ~ 5기 시민건강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위원회 임기 (2년)	계	위원 명단				
			시민	단체 추천	전문가	시의원	당연직*
1기	’14.10.17~’16.10.16.	30	16	6	5	1	2
2기	’17.1.11.~’19.1.10.	30	20	4	3	1	2
3기	’19.2.25.~’21.2.24.	30	18	6	3	1	2
4기	’21.2.25.~’23.2.24.	30	20	4	3	1	2
5기	준비중	25	10	6	6	1	2

※ 당연직 위원: 행정1부시장, 시민건강국장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민건강위원회’는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대면 회의 활성화로 회의운영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기정예산 **약1,300만원에 더해 약 61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음.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사무관리비	(x-) 19,105천원	(x-) 13,000천원	(x-) 6,105천원

3) 제12조의2(원격회의)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4) 제5기 시민건강위원회 선정심사 결과 보고 (보건의료정책과-13757)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회의참석수당, 운영비 등 6,105,000원	=	6,105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에 따른 대면회의 활성화로 회의운영비 추가 소요</li> <li>○ 올초 1회 개최로 집행률 32.7%, 향후 총 3회 추가 개최 예정</li> </ul>		

## ② 검토의견

첫째, ‘전액 시비’ 사업인 ‘시민건강위원회’의 최근 3년간 사업 예산 평균 불용률(약 48%) 및 직전 22년 사업 불용률(약 64%)이 상당히 높음. 그럼에도 2023년 본예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따라서, 동 사업의 “높은 불용액에 대한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전액 시비’ 사업인 시민건강위원회의 최근 3년간 사업 예산 평균 불용률은 약 48%이며, 최근 2022년 사업 결산상 불용률은 약 64%로 상당히 높은 편임.

〈 최근 3년간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결산 불용률〉 (단위: 천원, %)

연도	최종예산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020	13,000	△1,960	<b>11,040</b>	4,188	<b>6,852</b>	<b>62.1%</b>
2021	13,000	-	<b>13,000</b>	10,468	<b>2,532</b>	<b>19.5%</b>
2022	13,000	-	<b>13,000</b>	4,622	<b>8,378</b>	<b>64.4%</b>
합계	39,000	△1,960	<b>37,040</b>	19,278	<b>17,762</b>	<b>48.0%</b>

- 이와 관련해 집행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현안업무 대응과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주요 심의 안건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심의가 생략되어 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 역시 본 위원회가 자문하고 심의해야 할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안건 중 하나라 사료됨.
- 그리고 과거 본 위원회의 1차 서면회의 (20. 8. 31.)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위원들에게 서면 보고한 사례가 있고, 이에 따라 위원들이 코로나 19대응과 관련해 표명한 의견이 ‘심의 결과서’에 남아 있음.
- 또한, 2021년 3월 25일에 「시민건강관리 조례」 제12조의2<sup>5)</sup>(원격회의)가 신설되었음. 따라서, 적어도 2021년 3월 이후인 2022년의 경우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물리적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 ‘원격회의 등’을 통해 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사료됨. 그리고 동 조문 신설 이전 2020년의 경우에도, 회의 운영 2회 모두 ‘서면 회의’로 운영된 사례가 존재함.

---

5)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12조의2(원격회의)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이와 더불어, 동 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시민건강관리 조례」 제9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호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제2호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제3호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4호 “시가 관할하는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호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다양함.
- 그러므로, 집행부가 회의 미개최 및 불용사유로 든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생략은 제5호에만 해당 하는 사항일 뿐 제5호 이외의 다른 각호의 사항을 포괄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가 생략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각호와 관련된 사업을 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논의 할 수 있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코로나19 재유행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생략’ 은 「시민건강관리 조례」 제12조제2항<sup>6)</sup>에 따라 원칙적으로 분기별 연 4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할 동 위원회의 ‘회의를 미개최할 사유’와 ‘회의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 발생’의 타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사료됨.

6)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12조(회의 운영) ②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둘째, 본 위원회의 “과거 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의 불가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

- '20년부터 22년까지 시민건강위원회의 정례회의 성과를 보면, 조례상 분  
기별 연 4회 개최가 원칙임에도 모두 연 2회만을 개최하였고 또 '22년의  
경우는 4분기에 2회를 몰아서 개최한 경우도 있음.

〈 최근 3년간 시민건강위원회 정례회의 운영 현황 〉

구 분	2020				2021				2022				2023.6 월 기준
정례 회의 (총계)	2회 〔서면 2회〕				2회 〔대면1, 화상1〕				2회 〔서면1, 대면1〕				현재 진행중
분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	-	1회	1회	1회	-	1회	-	-	-	-	2회	1회
일시	20.8. 31.〔서면회의〕 20.12.21.〔서면회의〕				21.3.19.〔대면회의〕 21.9.15.〔화상회의〕				22.10.14.〔서면회의〕 22.12.23.〔대면회의〕				23.2.17. 〔대면회의〕
회의 기준	<p>「시민건강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b>분기별 연4회 개최해야 하는 회의</b>는 동 조례 제12조제4항7)에 의거 <b>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회의만을 의미함.</b> 따라서, <b>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b> 1) 20. 8. 12. 회의 (참석자 7명), 2) 21. 4. 26. 회의 (참석자 5명)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b>분기별 회의에서 제외함.</b></p>												

7)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12조(회의 운영) ②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또한 2022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조직담당관-20611)에 따라, 본 '시민건강위원회'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및 위원수 적정화 추진" 대상인 "위원수가 25명 이상인 위원회" (22년 기준 위원수 총 30명(당연직 2명 포함))에 속하는데,
- 제4기 위원회 총 위원 수 30명 대비 회의 개최 횟수가 조례상 '의무 횟수'를 준수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함. 그리고 동 위원회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8조<sup>8)</sup>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따라 운영될 위원회인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유사·중복될 소지가 있음.

[ 2022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조직담당관 - 20611) ]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및 위원수 적정화 추진** ↓

- (대 상) 위원수가 25명 이상인 50개\* 위원회 (\*별도 첨부) ↓
- (검토기준) 정책환경 변화로 필요성·기능 축소, 위원구성 편향성 여부, 회의 개최 횟수·안건수 대비 위원수가 많거나 미활동 위원이 많은 위원회 ↓
- ▶ 위원구성 : 15명 이내 권고(서울시 위원회 지침) ↓
- (적정화 방안) ① 활동실적 미흡 위원 해촉, ② 위촉 분야 재구조화, ③ 위원수 축소 등 ↓

8)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8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이와 더불어 제5기 시민건강위원회 선정심사 결과보고 (보건의료정책과-13757) 의 향후 일정에 따르면, 시민건강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 개최는 23. 5. 23.로 예정되었으나,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6월 중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제5기 시민건강위원회 선정심사 결과보고 (보건의료정책과-13757) ]

□ 향후일정

- |                         |             |
|-------------------------|-------------|
| ○ 시민건강위원회 위원 선정 공고      | '23. 4. 25. |
| ○ 시민건강학교 개최(공모시민 대상)    | '23. 5. 12. |
| ○ 시민건강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 | '23. 5. 23. |

- 그리고 2014년 「시민건강관리 조례」 제정 이후, 조문 개정 없이 “분기별 1회 (연4회) 정례회의 개최”를 명시한 동 조례 제12조제2항<sup>9)</sup>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사업이 2023년에 들어 본 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되어야 할 긴급성이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상황 변경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9)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12조(회의 운영) ②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별설명서 p.1371>

### ① 사업개요

-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또는 남용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sup>10)</sup>, i)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 ii) 중독자 치료·재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sup>11)</sup>.
- 이번 추정안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불법 마약류 사용 및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에 총 6억 1,85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제출함.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총감	추경 사유 및 산출내역
계	(x-) 839,500	(x-) 221,000	(x-) 618,500	마약류 사용 예방 및 검사·치료 지원을 위한 중핵
사무관리비	(x-) 247,500	(x-) 120,000	(x-) 127,500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 97,000천원 ○서울시 마약대응 협의체 운영 = 30,500천원
기타보상금	(x-) 11,000	(x-) -	(x-) 11,000	○형소년·대학생 대상 공모전 보상 = 11,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x-) 101,000	(x-) 101,000	(x-) -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480,000	(x-) -	(x-) 480,000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 135,000천원 ○보건소 익명 마약검사 = 165,000천원 ○마약류중독자 위해 치료기관 지원 = 180,000천원

- 10)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1)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생략>

- 서울시는 2023년 6월 현재,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sup>12)</sup>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지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sup>13)</sup>하여 지방보조사업으로 수행(민간경상사업보조 기정예산 1억 100만원)하고 있는 상황임<표-1 참고>.

---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 ⑤ <생략>.

1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 ④ <생략>.

<표-1> 2023년 서울특별시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 개요

- 사업명 : 2023 서울시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
- 사업목적 : 유해약물 오남용에 의한 피해예방
- 추진기간 : 2023.04.~2023.12.31.
- 보조금 : 101,000천원
- 단체명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지부
- 주요사업 내용 및 사업별 세부 목표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 학교 내 청소년 500명
    - ▶ 학교 밖 청소년 250명
    - ▶ 서울시민약물예방교육 50명
  - 재활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판정자 100명
  -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 ▶ 서울마퇴강사단,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30명
  - 유해약물 인식개선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 ▶ 불법마약퇴치홍보 10건
  - 마약류특화프로그램
    - ▶ 또래리더학교 50명
    - ▶ 마약류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프로그램 5건

· 2023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성과목표

세부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학교 내 청소년	3.5점 이상(5점만점)	기관만족도
	학교 밖 청소년	3.5점 이상(5점만점)	기관만족도
	서울시민 약물예방교육	3.5점 이상(5점만점)	기관만족도

○ 산출목표

세부사업명		산출목표	산출지표
재활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	100명	참여인원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전문 강사양성교육	30명	참여인원
유해약물 인식개선 특화프로그램	불법마약류 퇴치 홍보	10건	실시건수
마약류 특화 프로그램	또래리더학교	50명	참여인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프로그램	5건	실시건수

\*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등의 상황으로 산출목표 설정

## ② 검토의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지부는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을 증대하고,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등의 경우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예방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시민건강국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지부를 통해 추진한 '2021년~2022년 서울시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첫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지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자체 성과목표로 학교 내 청소년 수(명), 학교 밖 청소년 수(명), 서울시민 약물예방교육 수(명), 또한 성과지표로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만족도(3.5점 이상)'를 설정하여 사업의 성과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있음.
- (2022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2022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지부의 '사업 추진실적'(보건의료정책과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내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목표치의 5813%를 달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목표치의 436%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표-2 참고>.
- 이처럼 목표 대비 성과가 5813% 높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교육을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은 2021년부터 지속되어 왔고, 해당연도에도 비대면 교육을 수행하여 목표 대비 성과가 995%로 높게 나타난 바 있음. 따라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지부는 과거 실적(2021

년) 및 코로나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경우, 전년도(2021년)의 달성 성과보다 낮은 수준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함.

- 비대면 교육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목표 대비 성과가 5813% 높게 나타날 경우,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실적의 객관적·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둘째. 2022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교육대상은 학교 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서울시내 교사, 학부모,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만족도 조사는 모두 기관 근무자(선생님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표-2 참고).

  - 2022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학교 내 청소년 이수자는 총 14,533명으로 나타났으나, 만족도 조사 대상은 모두 교사(57명)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교육대상에 대한 교육의 효과성 등을 점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표-2> 2021~2022년 서울특별시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

대상구분		서비스 대상자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성과목표(인원)			성과지표 (기관만족도)		목표인원			성과지표 (기관만족도)		목표인원	성과지표 (기관만족도)
			목표	실적	달성도	목표	달성	목표	실적	달성도	목표	달성도	목표	목표
유해약물오남용예방교육	학교 내 청소 년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500명	<b>4976명</b>	<b>995%</b>	3.5점	<b>4.67점</b>	250명	<b>14,533명</b>	<b>5813%</b>	3.5점	<b>4.67점</b>	500명	3.5점
	학교 밖 청소 년	집단시설 이용자 및 사회복지시 설 이용자	300명	<b>471명</b>	157%	3.5점	<b>4.86점</b>	100명	<b>436명</b>	<b>436%</b>	3.5점	<b>4.86점</b>	250명	3.5점
	서울시 민 약물예 방교육	서울시내 교사, 학부모 및 어르신 등	150명	<b>53명</b>	35%	3.5점	<b>4.63점</b>	70명	<b>164명</b>	234%	3.5점	<b>4.63점</b>	50명	3.5점

- 최근 마약범죄에 노출되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등의 경우 연령별·소속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적정 표본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자치구들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지부 또는 서울시 약사회 강사 등을 통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13500만원)인데, 서울시는 향후 자치구들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상별 교육효과 등을 점검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지부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목표를 과소 설정하지 않게 관리하고, 대상별 적정수준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3)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사업별설명서 p.1421>

#### ① 사업개요

- 우리나라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지원 범위와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고 있음.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 건강보험(본인부담율 30%) 적용<sup>14)</sup>으로 인해 대다수 비급여 시술수가를 급여화 전환하였고<sup>15)</sup>,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함. 자세한 시술별 지원 횟수와 지원금액<sup>16)</sup>은 아래와 같음.

<표-3> 2023년 기준 난임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109.

- 한편, 이러한 중앙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변경되어, “재정분권의 취지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sup>17)</sup>. 이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곳

14) 그동안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큰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었지만, 2017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함.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16) (시술비 지급 기준) 시술기관에서는 시술대상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선택하게 하여 청구하도록 함. ① (일부·전부분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② (비급여)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③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들이 늘어나고 있음. 서울시 역시, 지난 2020년부터 건강보험 지원 횟수가 소진된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를 대상(소득기준 없음)으로 신선배아 시술비 추가 지원(1회 최대 180만원)을 하고 있음.

- 특히, 서울시는 지난 3월 8일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는데<sup>18)</sup> 그 내용을 보면 우선 i)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ii)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밝힘.

현행 (정부형 + 서울형)				지원 확대 (일원화)					
지원대상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지원대상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 (21회)	체외 수정	신선배아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모든난임부부(1회)	(서울형) 신선배아 1회		최대 180만원						

- 이번 추경안은 23년도 하반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105억 4797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추경 사유 및 산출내역
계	(x-) 22,158,214	(x-) 11,610,235	(x-) 10,547,979	2023년 하반기 난임지원 확대실시 추가 예산 증액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x-) 22,158,214	(x-) 11,610,235	(x-) 10,547,979	○ 하반기 난임지원 확대 예산 = 증 10,547,979천원

18) 자료: 이장성, 2023.03.08., “오세훈 시장, 초저출생 위기극복 첫 신호탄…난임부부 챙긴다”, 세계타임즈, <https://www.thesegeye.com/news/view/1065584506914654>

## ② 검토의견

첫째, 아이를 출산할 의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 중에 소득기준 때문에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도 난임 지원 소득 기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의 ‘난임 지원 소득기준 폐지’는 타당해 보임.

-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많은 수의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음. 맞벌이를 하면 기준중위소득 18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난임지원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이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sup>19)</sup>
- 실제로, 〈서울시 민원·제안 게시판〉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해달라는 요청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음. 몇 가지 글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음.

### <표-4> 서울특별시 시민제안 홈페이지

#### H씨(2022.08.08.) 난임부부 소득제한 없애주세요

저도 우선 이 글을 쓰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임신 쉬운줄 알았어요... 제 일이 될 줄 몰랐어요. 저출산 시대에 난임부부들은 자비를 들여 시험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함께 시술 비용 또한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맞벌이를 하면 넘게 되는 기준을 폐지해주세요! 난임부부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해주세요! 첫째만이라도요.... 부담스러운 시술비를 감당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19) 김태환(2022),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법연구 제47호, 531-565.

김씨(2023.02.20.) 난임부부 지원 확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5년된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워낙 아기를 좋아라 하지만 아직 직장생활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결혼하고도 집대출금, 학자금 등으로 아기만나는 것을 미루며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부터 아기천사 만날 준비를 했으며 시작 전, 산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론론 둘다 건강했기에 문제 될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산전검사를 받아보니, 난임이라는 판정을 받게됩니다. 사실 이전 난임판정받기전, 저 또한 난임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시험관, 인공수정에 대해서도 관심 없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난임판정받고 막상 시험관시술을 진행하려고 하니, 지원금에 몇만원 차이로 저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맞벌이 부부안하는 가정이 몇이나 될까요?? 장기전이 될수 있는 시험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저희 부부는 얼마나 시도해야할지 시작 부터 고민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시험관 외에도 현재 시술로 인해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하며, 저희 외에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난임 부부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험관 하는 부부에게 모든 지원을 열어주세요. 난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세요.....저희도 예쁜 아기천사 만나고싶습니다.....

- 이처럼 아이를 출산할 의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 중에는 소득기준 때문에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생 현상은 날로 심화하고 있고”<sup>20)</sup>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결혼 연령이 늦어져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는 난임 시술비를 모든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sup>21)</sup> 밝힌 만큼, 서울시가 난임 지원 소득기준을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둘째, 서울시의 ‘난임 시술별 칸막이 폐지’가 과연 시술여성의 건강권을 일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난임 지원정책인지 검토가 필요함.

- 2023년 현재 서울시의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많은 편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5 참고>

20) 자료: 이호준, 2023.02.23., “15년간 280조원 쏟아붓고도 ‘저출생 현상’은 계속”,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231008001>

21) 자료: 콕윤아, 2023.03.28., “5년간 신혼부부에 43만가구 공급…난임시술 소득 상관없이 지원,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7B74XNI>

<표-5> 해외 주요국의 난임시술 지원 현황<sup>22)</sup>

국가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독일	여성 40세 미만 남성 50세 미만	·인공수정 : 6회(배란유도제 사용시) 8회(미사용시) ·체외수정 3-4회	50% (건강보험)
영국	여성 42세 이하	·체외수정 39세이하 3회 42세이하 1회	100% (NHS기금)
일본	여성 42세 이하	·체외수정 39세이하 6회 (동결포함) 42세이하 3회	연 15만엔 (국고) (동결배아 7.5만엔)
프랑스	여성 45세 미만	·인공수정 6회 ·체외수정 4회	100% (건강보험)
네덜란드	여성 45세 미만	·체외수정 3회	80%(건강보험)
스페인	여성 40세 이하 남성 55세 이하	·체외수정 3회	지역별로 상이
스웨덴	여성 40세 미만 남성 56세 미만	·체외수정 3회 (이 과정에서 얻은 동결배아 포함)	100% (공공병원) 개인병원은 비급여
노르웨이	여성 40세 미만	·체외수정 3회	기금 일부 지원

- 선진국의 난임시술 횟수는 여성의 건강과 직결된 과배란 유도 횟수에 기준을 맞추어 과배란 유도 사용약제의 용량 및 효능 또는 부작용, 환자 건강영향 등의 심각성 및 반응, 장기적 영향 및 여성의 삶의 질 그리고 시술여성의 연령(난포 수)에 초점을 둔 임신·출산결과 등의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반영, 평가하여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횟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음<sup>23)</sup>.

22) 김태환(2022),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법연구 제47호, 531-565.

2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 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p309..

- 유럽국가에서는 대부분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횟수를 4회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영국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의 의료 전문가에 대한 지침을 살펴보면 시술여성이 40세 이하일 때는 체외수정 시술을 3회 제공하고 40~42세 이하일 때는 체외수정 시술을 1회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sup>24)</sup>.
- 이번 서울시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에는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음. 즉 총 22회의 범위 내에서 기존에는 체외수정(신선배아)을 10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횟수 제한도 없앤다는 것임.
- 물론, 난임 치료 지원은 다른 어떤 저출산 대책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난임 시술 횟수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서울시 민원·제안 게시판에 다수 올라오고 있음.

<표-6> 서울특별시 시민제안 홈페이지

고씨(2023.05.24.). 난임부부 첫째아이는 지원 횟수제한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월부터 서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소득제한 폐지해준 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난임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절실한 사람은 첫째아이를 바라고 시술을 하는 난임부부입니다. 첫째아이는 횟수제한을 폐지하고 무제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난소 기능저하 환자들은 여성의 나이가 어려도 한번의 차수를 써도 난자가 몇

2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 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p309..

개 나오지 않습니다. 요새 난소기능저하 환자가 점점 많아진다고 들었습니다. 경쟁 사회로 스트레스, 선천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등이 있겠지요. 이렇게 난자가 나와도 수정이 되는 건 또 더 적기 때문에 그 힘든 채취를 여러번 해서 한번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취 여러번과 이식 한번이 한번의 시험관 임신 도전인데 차수는 다수가 짝이게 됩니다. 첫째 아이를 성공하여 출산하게 되면 둘째도 도전할 것인데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출산율 기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절박한 첫째아이만큼은 지원 횟수제한 폐지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의 ‘난임 시술별 칸막이 폐지’는 이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 난임 시술별 칸막이 폐지가, 과연 시술여성의 건강권을 일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난임 지원정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즉,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료에 대해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임.
- 현재 보건복지부의 「2023 모자보건사업 안내」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i) 기본방향으로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난임시술 효과성 및 시술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ii) 지원범위의 경우, “지자체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본 지침에서 정한 지원내용\* 외 추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본 지침에서 정한 지원범위(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최대지원횟수, 지원금액)는 반드시 준수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이번 “난임 지원 확대” 계획 시행을 위하여 그 사전절차로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협의완료)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현행 난임시술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는 시술에 따른 여성 건강 및 임상적 유효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의 지원범위를 준수하는 제도운영을 권장**”한다는 검토의견을 주었음.
- 따라서 서울시는 ‘난임 시술별 칸막이 폐지’가 과연 시술여성의 건강권을 일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난임 지원 정책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향후 서울시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그동안의 “예산 투입 대비 임신성공률”이라는 양적인 성과평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난임시술 이후 여성과 출생아의 건강권 확보와 같은 사후관리 강화에도 관심이 요구됨.

-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분명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sup>25)</sup>완화와 임신 성공률<sup>26)</sup>을 높여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고려한다면,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지원정책이라는 평가<sup>27)</sup>도 있음.

25) 난임 시술을 1회 이상 받은 자(653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기준(검사비, 시술비, 약제비, 주사제, 배아동결비 등 포함)으로 난임 치료를 위해 지출한 총 의료비는 지금까지 1,000만원 이상이 전체의 35.9%, 1억 이상도 1.2%도 있음(기타 100만원 미만 9.0%, 100~300만원 미만 19.9%, 300~500만원 미만 16.8%, 500~1,000만원 미만 18.4%).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26) `18~22년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건수 및 임신성공률 현황

- 2018년 지원건 1,639, 임신건 512, 임신성공률 31.2%
- 2019년 지원건 12,859, 임신건 3,654, 임신성공률 28.4%
- 2020년 지원건 17,722, 임신건 5,135, 임신성공률 29.0%
- 2021년 지원건 20,094, 임신건 5,719, 임신성공률 28.5%
- 2022년 지원건 20,288, 임신건 5,522, 임신성공률 27.2%

※ 임신성공률(%) = 임신성공건수/체외·인공수정 난임시술 총건수\*100

※ 출처: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2023), PHIS(보건의료정보시스템) 자료

27) 김태환(2022),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법연구 제47호, 531-565.

- 서울시 역시, 전체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표-5 참고>, 이번 서울시의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향후 난임시술에 의한 출생률은 전체에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예상이 됨.

<표-7> 서울시 출생아수 및 난임시술 출생아수

- ('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 전국최저) 0.59명 vs 전국 합계출산율 0.78명
- (서울시 출생아수 지속감소) '18년 58,074명 → '20년 47,445명
- (서울시 난임시술 출생아수 증가) '18년 2,142명 → '20년 2,578명
- (서울시 남녀 난임진료인원 증가) '19년 52,617명 → '20년 53,207명
- (서울시 소재 요양기관 난임시술 진료금액 증가) '18년 66,230,149천원→ '20년 86,023,645천원

자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2022),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등

-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정부예산 투입 대비 임신성공률’이라는 양적인 성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난임부부 지원에 성과지표로, ‘난임시술 후 임신성공률’이라는 양적인 성과에 관한 목표치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표-8>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요청서

※ 사후 성과관리 계획(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성공률(%)의 연차별 달성 관리)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9%	31%	33%	35%	36%

- 임신성공률(%) 산출방법: 임신성공건수/당해년도 체외·인공수정 난임시술건수\*100
- 임신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시술 선택권 보장으로 임신성공률 제고 가능

- (난임시술 여성과 출생아의 건강 사후관리의 필요성)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년 간(2011~2020)간 출생률은 감소하였는데, 다태아 비중은 2010년 전체 출생아의 2.7%에서 2020년 4.9%로 오히려 증가하였고, 다태아에서의 조산아 비율은 2010년 53.7%에서 2020년 63.4%로 소폭 증가함<sup>28)</sup>.

- 즉, 난임진단자와 시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술 건수 내 다태아 출생아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조산아의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음<sup>29)</sup>.
- 일찌감치 보조생식술을 도입한 해외 국가들은 중장기적 건강영향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sup>30)</sup>,
  -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여성 그룹보다 태아의 출생결과가 미숙아, 저체중일 가능성이 높고, 태어난 이후 장기 입원할 가능성이 높아짐.
  - 체외수정시술을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위험이 높음.
- 따라서 서울시는 그동안의 “예산 투입 대비 임신성공률”이라는 양적인 성과평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향후 난임여성과 출생아의 건강권 확보와 같은 사후관리 강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됨.

---

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